

#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#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002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4. 6. 26.

발의자 : 김도읍 · 구자근 · 강승규  
김희정 · 조지연 · 이성권  
주진우 · 김석기 · 윤재옥  
윤한홍 · 김기현 · 신동욱  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마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범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. 이 같은 마약 · 약물 중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이와 함께 중독자에 대한 완치와 재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함.

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마약류 및 약물에 대한 관리를 중심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을 뿐 예방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지 않음. 또한, 마약 · 약물 중독자에 대해 1년 이내에 치료만 하고 있고 예방 사업으로는 교육 및 상담에만 그치고 있어 중독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마약 · 약물 예방 및 중독자 관리에 대해서도 5년 단위로 기본

계획을 수립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,  
마약·약물 중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  
고자 함(안 제2조의3, 안 제51조의3 신설, 안 제41조의4 신설).

##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964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의3제3항제1호·제2호 및 제3호 중 “마약류관리에”를 각각 “마약류 관리와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관리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마약류관리의”를 “마약류 관리와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관리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전단 중 “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”을 “기본계획, 시행계획 또는 관리계획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“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”를 “기본계획, 시행계획 및 관리계획의”로 한다.

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및 생활 지원을 위하여 마약류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사례 관리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연도별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법률 제1964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1조의3부터 제51조의7까지를 각각 제51조의4부터 제51조의8까지로 하고, 제5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1조의3(마약류 중독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방지·회복 및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한 보호·교육·상담 및 홍보 사업
  2.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의 일상생활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중독자의 체계적·효율적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스템(이하 “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”)을 구축·운영해야 한다.
-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원활한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.
-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법률 제2021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1조의3부터 제51조의8까지를 각각 제51조의4부터 제51조의9까지로 하고, 제5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1조의3(마약류 중독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은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방지·회복 및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한 보호·교육·상담 및 홍보 사업

2.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의 일상생활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중독자의 체계적·효율적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스템(이하 “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”)을 구축·운영해야 한다.
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원활한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p>법률 제1964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의3(마약류관리기본계획) 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② (생 략)</li> <li>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li> </ul> <p>1. <u>마약류관리에</u>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</p> <p>2. <u>마약류관리에</u> 관한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</p> <p>3. <u>마약류관리에</u> 관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협조에 필요한 사항</p> <p>4. 그 밖에 <u>마약류관리의 체계적·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</p> <p>④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| <p>법률 제1964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의3(마약류관리기본계획) 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② (현행과 같음)</li> <li>③ -----</li> </ul> <p>1. <u>마약류 관리와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관리에-----</u></p> <p>2. <u>마약류 관리와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관리에-----</u></p> <p>3. <u>마약류 관리와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관리에-----</u></p> <p>4. -----<u>마약류 관리와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관리의-----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-----</u></p> |

|  |  |
|--|--|
|  | <p><u>정상적인 사회복귀 및 생활 지원을 위하여 마약류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사례 관리계획</u>(이하 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연도별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⑤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<u>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</u>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⑥ 그 밖에 <u>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의</u>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법률 제1964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<br/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법률 제1964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<br/>제51조의3(마약류 중독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) ① <u>식품의약품안전처</u>장은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</p> |
|--|--|

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방지 · 회복 및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한 보호 · 교육 · 상담 및 홍보 사업

2.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의 일상생활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중독자의 체계적 · 효율적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스템(이하 “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”)을 구축 · 운영해야 한다.
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활한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의 구축 · 운영을 위하여 제51조의 2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의 구축 ·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

|  |   |
|--|---|
|  | <u>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  |
| <u>제51조의3(마약퇴치의 날) (생약)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제51조의4(마약퇴치의 날) (현행 제51조의3과 같음)</u>  |
| <u>제51조의4(실태조사) (생약)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제51조의5(실태조사) (현행 제51조의4와 같음)</u>   |
| <u>제51조의5(마약류 명예지도원) (생약)</u>                        | <u>제51조의6(마약류 명예지도원) (현행 제51조의5와 같음)</u>  |
| <u>제51조의6(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) (생약)</u>                   | <u>제51조의7(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) (현행 제51조의6과 같음)</u>   |
| <u>제51조의7(별 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) (생약)</u>                  | <u>제51조의8(별 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) (현행 제51조의7과 같음)</u>  |
| 법률 제2021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<br><u>&lt;신설&gt;</u> | 법률 제2021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<br><u>제51조의3(마약류 중독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u><br><u>1.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방지 · 회복 및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한 보호 · 교육 · 상담 및 홍보 사업</u> |

## 2.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의 일

상생활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중독자의 체계적·효율적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스템 (이하 “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”)을 구축·운영해야 한다.
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원활한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제51조의 2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51조의3(마약퇴치의 날) (생략)

제51조의4(실태조사) (생략)

제51조의5(마약류 명예지도원)

제51조의4(마약퇴치의 날) (현행 제51조의3과 같음)

제51조의5(실태조사) (현행 제51조의4와 같음)

제51조의6(마약류 명예지도원)

|   |   |
|---|---|
|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현행 제51조의5와 같음)   |
| <u>제51조의6(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<br/>의 설립) (생 략)</u>  | <u>제51조의7(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<br/>의 설립) (현행 제51조의6과 같<br/>음)</u> |
| <u>제51조의7(하수역학 마약류 사용<br/>행태조사) (생 략)</u> | <u>제51조의8(하수역학 마약류 사용<br/>행태조사) (현행 제51조의7과<br/>같음)</u> |
| <u>제51조의8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<br/>의 제) (생 략)</u>  | <u>제51조의9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<br/>의 제) (현행 제51조의8과 같음)</u>      |



## 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의원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(김도읍의원, 1002)

1. '법제업무 운영규정' 및 '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'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, 의견이 있을 경우 불임2의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신 후 '24.7.12 (금)까지 우리 처(마약정책과)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<주요내용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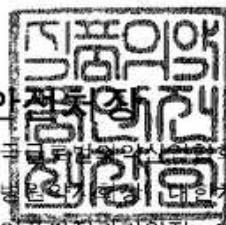
○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[의안번호 : 제2201002호]

- 마약·약물 예방 및 중독자 관리에 대해서도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, 마약·약물 중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2조의3, 안 제51조의3 등)

2. 아울러,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불임 1.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 1부.

2. 검토서 양식 1부. 끝



## 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,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, 한국제약환경위원회위원장,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약사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방문의사회장, 대한치과의사협회장, 대한치과병원협회장, 대한수의사회장, 한국동물약품협회장,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, 한국회구필수의약품센터원장,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

주무관 황재양 약무사무관 박미영 마약정책과장 정현철  
진결 2024. 7. 1.

### 협조자

시행 마약정책과-11089 (2024. 7. 1.) 접수  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오송보건의료행 / mfds.go.kr  
전화번호 043-719-2805 팩스번호 0502-604-7992 / 대국민 공개

힘내라 대한민국!

##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(안) 검토서

※ 담당자 : 000국 000과 000(전화번호 기재)

| 개정안 | 검 토 의 견 |      |
|-----|---------|------|
|     | 수정안     | 검토사유 |
|     |         |      |